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540756					
등록번호	110111-5407568					
상호 =	상 호 주식회사 씽크페이 (Think Pay)					
2	주식회사 륃 (Riiid)					
2	주식회사 뤼이드 (Ri	iid)	2014.08.14 변경 2014.08.14 등기			
Ž	주식회사 뤼이드 (Ri	iid Inc.)	2019.03.28 변경 2019.04.10 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 하우스)] 남대로27길 42, 101동 106호(한남동, 대성이태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 릉로 551, 5층(역삼동, 새롬빌딩)	2014.08.08 변경 2014.08.08 등기			
ب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	<u> </u>	2015.01.23 변경 2015.01.28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F	 헤란로63길 11, 8층 2호(삼성동, 이노센스빌딩)	2015.10.17 변경 2015.10.21 등기			
٠,	어울특별시 강남구 약	[삼로25길 37, 4층(역삼동, 근도빌딩)	2016.02.21 변경 2016.03.02 등기			
2	년울특별시 중구 삼 일	<u>]대로 343, 14층 131호, 133호(저동1가)</u>	2018.05.23 변경 2018.05.28 등기			
<u>ب</u>	· 응투별시 중구 삼일	<u>]대로 343, 14층 131호, 133호, 139호(저동1가)</u>	2018.05.29 변경 2018.06.05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F	 해란로87길 29, 10층(삼성동, 엠타워)	2018.12.31 변경 2019.01.08 등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터	헤란로 521, 10층(삼성동, 파르나스타워)	2021.02.18 변경 2021.02.19 등기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	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개재한다.				
	만, 전산장애 또는	러넷 홈페이지 (https://riiid.co/)에 게재한다.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	2019.03.28 변경 2019.04.10 등기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	•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고 종류 및 각각의 발행주식의 총수	구 100,000 주		중기연혈일
발명구식의 중구 보통주식	100,000 구 100,000 주	급 10,000,000 원	• • •
		합 10,000,000 전	· · ·
발행주식의 총수	107,147 주	7 10 714 700 0	2014.07.30 변경
보통주식	107,147 주	금 10,714,700 원	2014.07.3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11,431 주		2014.09.11 변경
보통주식	107,147 주	7 11 140 100 0	2014.09.17 등기
<u> </u>	4,284 7	금 11,143,100 원	0015 01 04 14 74
발행주식의 총수	139,291 주		2015.01.24 변경
보통주식	107,147 주		2015.01.28 등기
<u> </u>	4,284 주	7 12 000 100 0	
상환전환우선주식	27,860 주	금 13,929,100 원	0015 00 14 버 커
발행주식의 총수	140,962 주		2015.02.14 변경
보통주식	107,147 주		2015.02.23 등기
우선구식 시청기청이 시조지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27,860 주	7 14 000 000 0	
전환우선주식 발행주식의 총수	1,671 주	금 14,096,200 원	0015 00 00 번 건
발행구식의 중구 보통주식	148,616 구	7 💍	2015.09.26 변경
보증구역 우선주식	107,147 주	J- 13	2015.10.05 등기
수환경환우선주식 상환경환우선주식	4,284 주		
	27,860 주		
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2	1,671 주	7 14 0C1 C00 0	
<u>선완구선구역</u> 2 발행주식의 총수	<u> 7,654 주</u>	금 14,861,600 원	0010 01 00 버 거
발행구식의 중구 보통주식	203,111 주		2016.01.23 변경
우선주식	107,147 주		2016.02.01 등기
수환경환우선주식 	4,284 주 27,860 주		
정환선환구선구석 전화우선주식			
전환구선구식 각화우선주식2	· · · · · · · · · · · · · · · · · · ·		
전환수신구식4 종류주식	7,654 주	금 20,311,100 원	
*************************************	<u>54,495 주</u> 223,421 주	□ 20,311,100 전	2017 04 00 H H
발생구식의 중도 보통주식	223,421 구 		2017.04.08 변경 2017.04.18 등기
우선주식	4,284 7		2017.04.10 중기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구 27,860 주		
	· · · · · · · · · · · · · · · · · · ·		
전환우선주식	1,671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전환우선주식2 7,6	54 주	
	95 주 <u>금 22,342,100 원</u>	
발행주식의 총수 230,19	1 주	2017.06.16 변경
보통주식 107,14	17 주	2017.06.26 등기
우선주식 4,28	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5	30 주	
전환우선주식 1,6%	71 주	
전환우선주식2 7,6	5 4 주	
중류주식 74,80	05 주 <u>금 23,019,100 원</u>	
발행주식의 총수 287,76	4 주	2018.04.28 변경
보통주식 107,14	17 주	2018.05.04 등기
우선주식 4,28	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5	30 주	
전환우선주식 1,6%	71 주	
전환우선주식2 7,6	5 4 주	
중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57,5	73 주 급 28,776,4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87,92	4-주	2018.11.14 변경
보통주식 107,36	07 주	2018.11.27 등기
우선주식 4,28	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5	30 주	
전환우선주식 1,6%	71주	
전환우선주식2 7,6	54 주	
	9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57,5	73 주 급 28,792,4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05,06	5-주	2019.05.29 변경
보통주식 107,30	· •	2019.05.31 등기
<u> 우선주식</u> 4,28		
상환전환우선주식 34,65	30 주	
	71 주	
	54 주	
	95 주	
	14 주 금 30,506,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2,49 6	· · · · · · · · · · · · · · · · · · ·	2019.07.16 변경
보통주식 107,30	·	2019.07.29 등기
1	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		
1	71 주	
전환우선주식2 7,6	5 4 주	

프로우식 102,139 주 만해주식의 종수 322,930 주 보통주식 102,139 주 만해주식의 홍수 322,930 주 수 신존식 4,284 주 상관권한 선주식 34,630 주 전환상환 인선주식 7,654 주 중류주식 14,805 주 전환상환 인선주식 1,677 주 전환상환 인선주식 34,630 주 전환상환 인선주식 34,630 주 전환 인선주식 34,630 주 전환 인선주식 34,630 주 전환 인선주식 34,630 주 전환 인선주식 1,671 주 인환 인수 인주 4 1,895 주 전환 인수 인주 4 1,894 주 상환 원환 인선주식 1,671 두 인환 인수 인주 4 1,894 주 상환 원환 인수 이 1,671 두 인환 인수 인주 4 1,894 주 상환 원환 인수 이 1,671 두 인환 인수 인주 4 1,894 주 상환 원환 인수 이 1,671 두 인환 인수 인수 인수 1,671 두 인환 인수 인수 인수 1,671 두 인환 인수 인수 인수 1,671 두 인환 인수 인수 1,671 두 인환 인수 인수 1,671 두 인환 인수 인수 1,671 두 인후 인수 인수 1,671 두 인환 인수 인수 인수 1,671 두 인환 인수 인수 1,671 두 인환 인수 인수 인수 1,671 두 인환 인수 인수 1,671 두 인후 인수 인수 1,671 두 인수 1,671 두 인후 인수	발행주식의 총수	-와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관한생주식의 홍수 382,930 주 명시 2019.07.16 변경 2019.07.16 변경 보통주식 107,747 주 수 선주식 4.284 주 상환천환수선주식 1.671 주 건환상환수선주식 102,139 주 반행주식의 홍수 333,630 주 보통주식 107,847 주 수 선주식 4.284 주 성환천환수선주식 1,671 주 전환수선주식 1,671 주 전환수선주식 102,139 주 반행주식의 홍수 34,630 주 전환상환수선주식 102,139 주 반행주식의 홍수 102,139 주 반행주식의 홍수 102,139 주 전환상환수선주식 1,671 주 전환수식 1,671 주 전환상환수선주식 1,671 주 전환수식 1,671 주 전환상환수선주식 1,671 주 전환수식 1,671 주 전환수식 1,671 주 전환수식 1,671 주 전환상환수선주식 1,671 주 전환상환수전수식 1,671 주 전환상환수전수 1,671 주 전환상환수전환수전수 1,671 주 전환상환수전환수전수 1,671	그 종류 및 각각의	의 수	사본급의 백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382,930 수 보통주식 107,747 주 우선수식 4,284 주 4한관원인수식 1,671 주 전환 수선주식 34,630 주 건환 수선주식 333,030 주 건환 수선주식 333,030 주 건환 수선주식 34,630 주 건환 수선주식 4,284 주 수 관관 수 선주식 4,284 주 수 선주식의 총수 33,560 수 구 전주식의 총수 33,560 수 구 전주식의 총수 34,630 주 구 건선주식의 총수 4,284 주 수 선주식의 총수 4,284 주 수 선주식의 총수 34,630 주 구 건선주식의 총수 4,284 주 수 선주식의 총수 34,630 주 구 건선주식의 총수 4,284 주 수 선주식의 총수 34,630 주 구 건선주식의 34,630 주 구 건선주식의 34,630 주 구 건선주식의 34,630 주 구 건선주식의 34,630 주 구		74,805 주		
보통주식 4,284 주 상환전환으로 1,671 주 전환으로 102,139 주 102,139 주 2019.07,29 등기 2019.07,20 등기 2019.07,20 등기 2019.07,20 등기 2019.07,20 등기 2019.07,20 등기 2019			금 33,249,000 원	
우선주식 4,284 주 상환권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권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권환우선주식 102,139 주 교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관광상환우선주식 1,671 주 권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권환우선주식 1,671 주 권환우선주식 1,671 주 권환우선주식 1,671 주 권환우선주식 1,671 주 권환우선주식 1,671 주 권환수장환구선주식 1,671 주 권환수장환구선주식 1,671 주 권환수장환구선주식 1,671 주 권환수장환우선주식 1,671 주 권환수장환우선주식 1,671 주 권환수장환우선주식 1,671 주 권환수장환우선주식 1,671 주 권환수장환구선주식 1,671 주 건환수장환구선주식 1,671 주 건환수장후 건추식 1,284 주 전환수작식 1,671 주 건환수장수식 1,671 주 건환수장후 건주식 1,284 주 건환상환우선주식 1,284 주 건환수작식 1,284 주 건환상환우선주식 1,284 주 선주식 1,284 주 선관주식 1,284 주 선구식 1,284 주 선관주식 1,284 주 선관관주식 1,284 주 선관주식 1,284 주 선관주식 1,284 주 선관관주식 1,284 주 선관관관주식 1,284 주 선관관주식 1,284 주 선관관관주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		· · · · · · · · · · · · · · · · · · ·		
상환진환우선주식 1,671 주 권환우선주식 7,664 주 중류주식 74,805 주 권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333,030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진환우선주식 1,671 두 권환우선주식 1,671 두 권환우선주식 1,671 두 권한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334,230 주 만행주식의 홍수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34,630 주 신한우선주식 1,671 두 신한우선주식 1,671 두 신		· · · · · · · · · · · · · · · · · · ·		2019.07.29 등기
전환우선주식2 7,654 주 중류주식 74,805 수 전환상환우선주식2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2,139 주 보통주식 4,284 주 상환권환우선주식 4,284 주 신환우선주식2 7,654 수 중류주식 74,805 수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2,139 주 안환권환우선주식 4,630 주 신환우선주식 4,630 주 신환우선주식 7,654 수 정한권환우선주식 1,671 주 신환우선주식 4,284 주 성환권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4,284 주 선환우선주식 7,654 수 중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산환관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권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장환권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장환권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4,630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2 7,654 주 경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생주식의 총수 333,030 주 보통주식 107,8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건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4,630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4,230 주 산환건환우선주식 1,671 주 산환우선주식 1,671 주 산환양환우선주식 1,671 주 산환우선주식 1,671 주 산환연환우선주식 1,671 주 산환연환우선주식 1,671 주 산환유선주식 1,671 주 산환연환우선주식 1,671 주 산환연환우선주식 1,671 주 산환유선주식 1,671 주 산환연환우선주식 1,671 주 산환연환우선주식 1,671 주 산환유선주식 1,671 주 산환연환우선주식 1,671 주 산환연환수 1,671 주 전환수수 1,671 주 산환연환수 1,671 주 전환수수 1,671 주 산환연환수수 1,671 주 산환연환수수 1,671 주 전환수수 1,671 주 산환연환수수 1,671 주 산환연환수수 1,671 주 전환수수 1,671 주 산환연환수수 1,671 주 전환수수 1,671 주 산환수수 1,671 주 전환수수		, , , , , , , , , , , , , , , , , , ,		
중류주식 74,805 주 전환상원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3,030 주 보통주식 107,8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4,230 주 보통주식 109,0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74,605 주 전환우선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147 주 수선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수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진환우선주식 1,671 주 장환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4,805 주 전환수전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4,630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10,46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급 33,293,000 원 발해주식의 홍수 333,039 주 보통주식 107,8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관환우선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해주식의 홍수 334,230 주 보통주식 109,0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관환우선주식 34,630 주 관환우선주식 1,671 주 관환우선주식 34,630 주 관환우선주식 1,671 주 관환우선주식 1,671 주 관환우선주식 1,671 주 관환우선주식 1,671 주 관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0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02,139 주 관향우선주식 1,671 주 관향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관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관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관환우선주식 1,671 주 관환상환우선주식 1,8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발해주식의 총수 107.847 주 107.8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권환우선주식 1.671 주 진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해주식의 총수 102.139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진환우선주식 1.671 주 진환우선주식 102.139 주 보통주식 109.047 주 수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진환우선주식 1.671 주 진환수인주식 1.671 주 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보통주식 107,847 주 4,284 주 4,284 주 4,284 주 34,630 주 관환 수산주식 1,671 주 관환 수산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334,239 주 관환 수산주식 1,671 주 관환 수산주식 109,0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 신환 우선주식 34,630 주 관환 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34,630 주 관환 수산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35,130 주 반항후 수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 신환 우선주식 102,139 주 관환 수산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1,671 주 건환 우선주식 4,284 주 상환 신환 우선주식 1,671 주 건환 우선주식 1,671 주 건환 우선주식 1,680 주 건환 우선주식 1,680 주 건환 우선주식 1,671 주 건환 수선주식 1,284 주 건환 전환 우선주식 1,284 주 건환 건환 우선주식 1,284 주 상환 권환 우선주식 1,284 주 34,630 주			금 33,293,000 원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관환우선주식2 7,654 주 공류주식 102,139 주 말행주식의 홍수 109,0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02,139 주 말행주식의 홍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구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구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654 주 종류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중류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중류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수식의 홍수 335,650 주 보통주식 1,630 주		, · · · · ·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9,0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권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34,630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2019.11.05 등기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수선주식2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4,230 주 보통주식 109,0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1,630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수전후식 34,630 주 전환수전후식 1,671 주 전환수전후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수전후식 7,654 주 종류주식 7,805 주 전환수전후식 1,671 주 전환수전후식 7,654 주 종류주식 7,805 주 전환수전후식 1,671 주 전환수전후식 1,671 주 전환수전후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수전후식 1,671 주 전환수전후식 1,671 주 전환수전후식 1,671 주 전환수전후식 34,630 주 전환수전후식 1,671 주 전환수전후식 1,671 주 전환수전후식 34,630 주 전환수전후식 1,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 · · · · · · · · · · · · · · · · · ·		
전환우선주식2 7,654 주 중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4,230 주 보통주식 109,047 주 우선주식 4,284 주 관환우선주식2 7,654 주 종류주식 109,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09,947 주 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109,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5,650 주 만항주식의 총수 35,650 주 만항주식의 총수 35,650 주 만항주식의 총수 35,650 주 안환주식의 총수 35,650 주 안환주식의 총수 35,650 주 안환주식의 총수 35,650 주 안환주식의 총수 34,630 주		· · · · · · · · · · · · · · · · · · ·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급 33,303,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4,230 주 보통주식 109,0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중류주식 74,805 주 전환용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9,9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02,139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조류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조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7,654 주 조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수학수식2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34,630 주		-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급 33,303,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4,230 주 보통주식 109,0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4,230 주 보통주식 109,0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109,139 주 관환상환우선주식 109,947 주 수선환상환우선주식 109,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중류주식 7,654 주 중류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중류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중류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109,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9,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9,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10,46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 , , , , , , , , , , , , , , , , , ,		
보통주식 4,284 주 상환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2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10,46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금 33,303,000 원	
우선주식4,284 주상환전환우선주식34,630 주전환우선주식1,671 주전환우선주식27,654 주종류주식74,805 주전환상환우선주식102,139 주발행주식의 총수335,130 주보통주식109,947 주우선주식4,284 주상환전환우선주식34,630 주전환우선주식1,671 주전환우선주식27,654 주종류주식74,805 주전환상환우선주식102,139 주발행주식의 총수335,650 주보통주식110,467 주우선주식4,284 주상환전환수선주식4,284 주상환전환수선주식34,630 주		, · · · · ·		
상환권환우선주식 1,671 주 권환우선주식2 7,654 취 종류주식 74,805 주 권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향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02,139 주 관환우선주식 4,284 주 수환관환우선주식 102,139 주 보통주식 102,139 주 보통주식 102,139 주 보통주식 102,139 주 보통주식 102,139 주 2020.04.28 변경 2020.05.14 등기		· · · · · · · · · · · · · · · · · · ·		2020.04.21 등기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2 7,654 주 중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335,650 주 보통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홍수 335,650 주 보통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2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금 33,423,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2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2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10,46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L Q	
중류주식 74,805 주 102,139 주 급 33,423,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4,805 주 전환우선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급 33,513,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10,46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금 33,423,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보통주식 109,9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금 33,513,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10,46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130 주 2020.03.31 변경 보통주식 109,947 주 수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7,654 주 중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급 33,513,000 원 보통주식 1,66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 · · · · · · · · · · · · · · · · · ·	→ 22 422 000 bl	
보통주식 109,94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2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금 33,513,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10,46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급 33,423,000 현	9000 02 21 배경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2 종류주식 전환상환우선주식2 종류주식 전환상환우선주식1,671 주 7,654 주 74,805 주 102,139 주급 33,513,000 원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수본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335,650 주 110,467 주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2020.04.28 변경 2020.05.14 등기		′ '		
상환전환우선주식34,630 주 1,671 주 2한우선주식27,654 주 7,654 주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금 33,513,000 원발행주식의 총수102,139 주 2020.04.28 변경 110,467 주 우선주식2020.04.28 변경 2020.05.14 등기				2020.04.24 371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2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금 33,513,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10,46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1 . —			
전환우선주식27,654 주종류주식74,805 주전환상환우선주식102,139 주발행주식의 총수335,650 주보통주식110,467 주우선주식4,284 주상환전환우선주식34,630 주				
종류주식74,805 주전환상환우선주식102,139 주금 33,513,000 원발행주식의 총수335,650 주2020.04.28 변경보통주식110,467 주2020.05.14 등기우선주식4,284 주상환전환우선주식34,630 주	지화우서주식?			
전환상환우선주식102,139 주금 33,513,000 원발행주식의 총수335,650 주2020.04.28 변경보통주식110,467 주2020.05.14 등기우선주식4,284 주상환전환우선주식34,630 주				
발행주식의 총수 335,650 주 보통주식 110,467 주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 , , , , , , , , , , , , , , , , , ,	금 33 513 000 원	
보통주식110,467 주2020.05.14 등기우선주식4,284 주상환전환우선주식34,630 주			ц 00,010,000 ц	2020.04.28 増경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 · · · · · · · · · · · · · · · · · · ·		
<u>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 전환우선주식 </u>	전환우선주식	, , , , , , , , , , , , , , , , , , ,		

540756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u>.</u>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전환우선주식2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02,139 주	금 33,56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83,599 주		2020.07.29 변경
보통주식	110,467 주		2020.07.29 등기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2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50,088 주	금 38,359,9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83,919 주		2020.08.06 변경
보통주식	110,787 주		2020.08.10 등기
우선주식	4,284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34,630 주		
전환우선주식	1,671 주		
전환우선주식2	7,654 주		
종류주식	74,805 주		
전환상환우선주식	150,088 주	금 38,391,900 원	

목

- 1. 프리랜서,취업 인터넷서비스운영업
- 1.인터넷 프리랜서 중개업
- 1.온라인,오프라인 리쿠르팅서비스
- 1.인터넷 기반기술을 이용한 채용,대행사업
- 1.B2B 거래중개서비스업
- 1. 직업소개소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및 채용임대업
- 1.디자인,영상제작물등의 온라인을 통한 전문직무소개업,제공자,자문업
- 1.인사 및 경영컨설팅사업
- 1.인터넷광고업
- 1.디지털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 1.광고 기획,제작
- 1.광고 공급 및 자문
- 1.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 1.광고대행업
- 1.미디어관련사업
- 1.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제작,대행 및 중개
- 1.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자문업
- 1.아이티(IT)서비스업
- 1.통신판매중개업

람

적



10756						
1. 전자상거래업						
에스크로 서비스						
1.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2019.08.09 삭제 2019.08.22 등기> - (2019.08.22 등기> - (20						
교육서비스업	<2019.08.09	추가	2019.08.22	등기>		
부대사업일체	<2019.08.09	추가	2019.08.22	등기>		
	10756 에스크로 서비스 !- 부대사업일체 교육서비스업 부대사업일체	에스크로 서비스 <mark>- 부대사업일체 </mark>	에스크로 서비스 <mark>- 부대사업일체 </mark>	에스크로 서비스 <mark>- 부대사업일체 </mark>		

1. 주모에 단단된 구대자답단제 ~2019.00.09 구/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장영준 86010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타4로 80, 107동 504호(식사동, 위시
<u>타일산자이1단지)</u>
사내이사 장영준 860104-*****
2015 년 01 월 23 일 수인의 이사로 변경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2017 년 01 월 23 일 주인의 이자로 한경 2013 년 01 월 26 일 동기
2020 년 05 월 02 일 중임 2020 년 05 월 14 일 등기 감시 박소연 840228 ****
2016 년 05 월 25 일 사임 2016 년 06 월 01 일 등기
사내이사 이재철 811124-*****
2015 년 01 월 23 일 취임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2015 년 06 월 26 일 사임 2015 년 06 월 26 일 등기
사내이사 현재의 850706~******
2015 년 01 월 23 일 취임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2016 년 01 월 26 일 사임 2016 년 01 월 27 일 등기
사내이사 노민성 871010-******
2015 년 01 월 23 일 취임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2017 년 05 월 02 일 사임 2017 년 05 월 12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김현진 790228-******
2015 년 01 월 23 일 취임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2016 년 05 월 25 일 사임 2016 년 06 월 01 일 등기
대표이사 장영준 86010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0, 107동 504호(식사동, 위시
타일산자이1단지)
2015 년 01 월 23 일 취임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대표이사 장영준 86010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3, 4층 402호(역삼동)
2016 년 01 월 27 일 주소변경 2016 년 02 월 05 일 등기
2017 년 05 월 02 일 중임 2017 년 05 월 12 일 등기
대표이사 장영준 86010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3길 19, 502호(삼성동)
2019 년 01 월 04 일 주소변경 2019 년 01 월 08 일 등기
대표이사 장영준 86010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16, 2001호(삼성동)
2019 년 07 월 22 일 주소변경 2019 년 07 월 29 일 등기
2020 년 05 월 02 일 중임 2020 년 05 월 14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최원혁 820225-******
2016 년 05 월 25 일 취임 2016 년 06 월 01 일 등기
2019 년 03 월 28 일 사임 2019 년 04 월 10 일 등기
사내이사 노민성 871010-******
2017 년 05 월 02 일 취임 2017 년 05 월 12 일 등기

등기번호	540756				
2020 \	년 05 월 02 일 ⁼	중임 2020 년	05 월	14 일	등기
사내이사 5	허재위 850706-****	**			
2019 ધ	선 03월 28일	취임 2019 년	04 월	10 일	등기
사외이사 호	호창성 741112-****	**			
2019 ધ	선 03월 28일	취임 2019 년	04 월	10 일	등기
사외이사 7	정화목 820811-****	**			
2019 닉	선 03월 28일	취임 2019 년	04 월	10 일	등기
사내이사 위	김정현 820511-****	**			
2021 \	선 04 월 30 일	취임 2021 년	05 월	06 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우선주식

우선주식의 내용

- 1.기본사항
- (1)일반사항:이익의 배당 및 청산시의 잔여재산 배분에 있어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1종 종류주식; 이하 "본건 주식")으로서 그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신주배정:발행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건 주식과 동일한 내용의 종류주식을 배정함.
- 2.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3.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
- (1)본건 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서, 어느 회계연도에 본건 주식에 대한 누적된 금액을 포함한 우선적 배당이 전액 결의되고 지급된 이후에야 법적으로 배당가능한 자금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이 지급될 수 있다. 본건 주식의 우선배당률은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의 연 1%로 한다.
- (2)본건 주식에 대해 주식배당을 할 경우에는 본건 주식과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 또는 주식배당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격에 의해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으로 배당한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4.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지를 불문하고 발행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본건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1)본건 주식에 대하여 (i) 당시 본건 주식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ii) 본건 주식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발생한 배당금(단 기지급 된 배당금은 제외)을 합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 (2)잔여재산이 본건 주식의 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본건 주식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540756

우선주식

(계속)

5. 전환권의 내용

- (1)전환권자: 본건 주식의 주주
- (2)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 (3)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수: 전환비율은 본건 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을 전환 당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로 하고,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이 때,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주식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 (4)전환가격: 최초의 전환가격은 본건 주식의 주당 발행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 (5)전환청구기간: 본건 주식의 주주는 본건 주식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본건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6)전환청구방법: 본건 주식의 주주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 및 전환 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후 본건 주식의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러 한 전환청구서를 수령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해당 보통주식의 수에 해 당하는 주권을 발행 및 교부하고 보통주식의 단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을 지급한 다.
- (7)전환의 효력발생: 전환청구시(전환청구서 제출일)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는, 본건 주식에 대한 우선 배당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본 건 주식의 주주의 모든 권리(본건 주식의 전환에 따라 보통주식을 지급받고, 동 전환시 보통 주식의 단주를 대신하여 현금을 수령하며, 본건 주식에 대하여 전환청구일까지 배당결의가 있 었으나 인수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함)는 본건 주식과 관 련하여서는 중지된다.

- (8)자동 전환: 전환청구기간의 종료일까지 전환 청구되지 않는 본건 주식은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 (9)전환가격의 조정: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수시로 조정된다.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우선주식

(계속)

가.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가격조정: 발행된 보통주식이(주식분할, 주식배당 등에 의해) 더 많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분할되었으나 발행된 본건 주식이 이에 상응하여 비례적으로 분할되지 않은 경우, 당시의 전환가격은 그에 상응하는 분할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비례적으로 감소된다. 발행된 보통주식이(그 종류의 변경 등에 의하여) 더 적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병합 또는 결합되었으나, 발행된 본건 주식이 이에 상응하여 비례적으로 병합 또는 결합되지 않은 경우, 당시의 전환가격은 그에 상응하는 병합 또는 결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비례적으로 증가된다.

540756

나.사채발행에 따른 가격조정: 본건 주식의 발행 이후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다.기타 유가증권 등의 분배에 따른 가격조정: 전환가격이 본 제9항에 의하여 달리 조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또는 제3자 발행의 유가증권이나 부채증서 또는 기타자산(현금배당 제외), 옵션, 권리를 보통주주에게 분배하거나 동 분배를 받을 보통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i) 본건 주식의 주주가 그 소유의 본건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동 주주가 본건 주식의 전환에 의하여 수령하게 될 숫자의 보통주식에 추가하여, (ii) 위 기준일 또는 분배일 현재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동 보통주식에 분배되었을 숫자의 유가증권 기타 자산, 권리 및 (iii) 그와 같이 분배된것으로 간주된 유가증권을 위 기준일로부터 전환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할 때 분배되었을 숫자의 유가증권 기타 자산, 권리 전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달성하는 내용으로 전환가격은 조정된다. 이 경우, 위 기간 동안 본건 주식의 권리와 관련하여 본 제 9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다른 가격조정도 적용된다.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우선주식

(계속)

라.재분류, 교환 및 대체에 따른 가격조정: 본건 주식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될 보통주식이 자본조정, 재분류 기타 사유(위에 규정된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은 제외)로 인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수의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변경될 경우, 자본조정 또는 재분류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은,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달리 수령할 수 있었던 보통주식의 수가 아니라, 본건 주식이 그러한 변경 직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수령할 수 있었던 수의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동 자본조정 또는 재분류에 의해 수령할 수 있었던 다른 종류의 주식의 수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적으로 조정된다.

마.자본조정, 분할,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에 따른 가격조정: 보통주식의 자본조정(본 제9항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할, 결합, 재분류, 또는 교환의 경우 제외), 또는 발행회사의 분할, 다른 회사와의 신설합병, 흡수합병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주주가그 소유의 본건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동 주주가 그러한 자본조정, 분할,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당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때 전환간주된 보통주식에 분배되었을 수량의 회사(또는 합병 등에 있어서의 승계회사)의 주식, 기타 유가증권, 또는 재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본조정, 분할,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의 일환으로 필요한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달성하는 내용으로 전환가격은 조정된다. 이러한 경우, 본건주식의 주주들의 그 후의 권리 및 이익과 관련하여 본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조정(이사회가 본건 주식의 내용과 조건에 부합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한 바에 따른다)이 이루어져 본 제9항에 명시된 규정들(전환가격의 변경, 전환 시 분배될 수 있는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 및 기타 조정 등과 관련한 규정 포함)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조정된 것으로 본다.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5 년 01 월 28

540756

일 등기

우선주식

(계속)

(10)전환시 발행될 주식을 위한 수권자본의 확보: 발행회사는 기 발행된 모든 본건 주식의 전환이 있는 경우 동 전환에 따라 보통주식을 발행하는데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를 확보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가 기 발행된 모든 본건 주식의 전환을 실행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발행회사는 그러한 전환에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우선주식의 내용을 이루는 우선권, 상환청구권, 전환권 기타 권리 및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의결권)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다.

제2조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

- 1. 본건 우선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우선배당액은 그 발행가액의 일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어 누적된다.
- 3.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행한 후에도 분배 가능한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이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배당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최대로 발행되었을 수량의 전환 신 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4.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에 대해 분배할 잔여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하 "청산분배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가. 우선분배액: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한다
- 나. 참가분배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분배를 행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보통 주식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시켜 분배한다(다만 가.호에 따라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한 재산은 미리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고 보통주주가 지분율에 따른 재산을 분배 받기 전까지 우선주식의 주주는 재산분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분배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최대로 발행되었을 수량 의 전환 신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5 년 01 월 24 일 설정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계속)

- 다. 본 항의 목적상 회사의 해산사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유를 말한다.
- (1)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i) 그 직전에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흡수합병, 인적분할합병, 주식양도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신설합병, 인적분할의 경우)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열람일시 : 2021년06월02일 10시59분48초

540756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된 경우, (ii) 회사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물적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물적분할의 경우)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되지 못하거나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iii) 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2)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현물출자, 실시권 설정 및 기타처분하는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때

- (3) 회사의 신규 주식(주식연계증권 포함)의 발행, 회사나 주주가 보유하는 기존 주식(주식연계증권 포함)의 매매 또는 양자가 결합된 동시 또는 순차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단, 본 항의 목적상 경영권 이전이라 함은 주식의 인수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거래의 결과 회사 발행의 주식총수(단, 전환주식과 주식연계증권의 경우는 당해 거래(복수의 순차 거래가 결합된 경우에는 최종 거래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 또는 증권에 관한 전환권, 인수권 또는 교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최종적으로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회사의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래가 있는 때}
- (4) 기타 법률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
- 5. 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 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본건 우선주식과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주식으로 한다.

2015 년 01 월 24 일 설정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계속)

제3조 (상환청구권)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항의 상환청구기간 내에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상환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2.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후 오(5)년이 되는 날부터로 한다.
- 3. 회사의 상환의무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발생하며, 기타 상환에 관한사항은 상법규정을 준용한다.
- 4.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i)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가액 및 (ii)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부터 상환기일까지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칠(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상환기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주식의 분할 내지 병합등을 포함하여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은 상환에 앞서 상환가액과는 별도로 변제하여야 한다.
- 5.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이하 "상환청구서"라 한다)로써 한다. 상환 청구서에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상환사유, 상환청구의 대 상이 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6. 회사는 상환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또는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영업일(이하 "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로부터 해당 주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가액의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이십(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2015 년 01 월 24 일 설정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540756

상환전환우선주식

(계속)

제4조 (전환권)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항의 전환기간 내에 그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본 조의 목적상 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보통주식을 "전환신주"라 한다.
- 2.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전환기간"이라 한다)은 그 발행일로부터 십(10)년간으로 한다.
- 3.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최소한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청구서에는 전환의 의사, 전환청구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주권에 기재될 주주의 성명 및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주권을 그 전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또는 그가 지명한 자에게 신속하게 교부한다.
- 4. 전환의 효력은 전환권을 행사한 때에 발생한다.
- 5. 본건 우선주식은 그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최초의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가액과 동액으로 하며, 최초의 전환비율은 1로한다. 다만, 전환가액은 제6항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된 전환가액은 후속조정이 이루어지기전까지 유효하다. 또한, 전환비율은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에 반비례하여 상향 조정된다.

2015 년 01 월 24 일 설정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계속)

- 6. 전환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조정된다.
- 가.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특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주식의 수량은 본건 우선주식 1주에 (본 조 제5항의 전환비율에 의해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량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취득한 가격) /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의 산식에 의한 비율을 반영해 산정된 보통주식의 수량으로 하기로 한다.
- 나. 본 항 가 호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의 일주당 취득가격 산정에서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일주당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 자), 주식배당 또는 액면분할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 수 * 직전 전환가액) + (추가주식수 * 추가주식의 발행가액)]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 수 + 추가주식 수)
- 다. 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상장을 하는 경우 주당 공모가격의 [70]%가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당 공모가격의 [70]%로 조정된다.
- 라. 본 항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또는 재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 또는 재조정을 행하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 조정 또는 재조정의 원인사실과 결과를 자세히 기재한 증명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2015 년 01 월 24 일 설정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제1조 (본건 우선주의 성질) 신주는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로서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0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2조 (우선적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열람일시 : 2021년06월02일 10시59분48초

540756

- 1. 본 계약에 의해서 발행되는 신주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한 때의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2. 신주의 최저이익배당률은 영업연도별로 발행가액의 1%로 하며 피투자기업의 결산결과 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익 배당을 하여야 한다. 단,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이 합의한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각 년도 별로 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투자기업이 최저이익배당률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경우에도 그 차이에 해당하는 액수가 다음해로 누적되지 않는다.
- 3. 피투자기업이 보통주의 배당률을 최저이익배당률보다 높게 정한 영업연도에는 보통주의 배당률과 최저이익배당률의 차이에 상당한 비율만큼 신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익을 배당하여야 한다.
- 4. 피투자기업이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신주의 주주는 신주의 인수가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한도까지 보통주에 우선하여 분배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신주의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잔여재산을 보통주 주주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지분 비율대로 분배를 받는다.
- 5.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주주는 이익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의 순위에 있어서 피투자기업이 2015년 1월 24일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식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 (전환에 관한 사항)
- 1. 신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동안 신주의 주주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게 되면 그 10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전환청구가 있는 날부터 보통주로 전환된다.
- 2.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대 보통주의 비율을 1 대 1로 한다
- 3. 피투자기업이 본건 우선주의 발행이후 본건 우선주의 인수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기존 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유상 증자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의 인수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더라도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의지에 의해 유상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
- 4.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x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 5. 전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정함에 따른다.
- 6. 본조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한다. 제8조 (기타의 권리에 관한 사항)
- 1. 본건 주식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하여 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보통주식의 주식수대로 '1주1의결권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 2. 신주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이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본 신주와 같은 종류와 내용을 가진 우선주를 지분에 따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지분에 따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5 년 02 월 14 일 변경 2015 년 02 월 23 일 등기

전환우선주식2

2015. 9. 26.자 발행 우선주식(전환우선주식)

제1조 (본건 우선주의 성질) 신주는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로서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540756

0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2조 (우선적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 1. 본 계약에 의해서 발행되는 신주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한 때의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2. 신주의 최저이익배당률은 영업연도별로 발행가액의 1%로 하며 피투자기업의 결산결과 배당 가능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익 배당을 하여야 한다. 단,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이 합의한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각 년도 별로 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투자기업이 최저이익배당률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경우에도 그 차이에 해당하는 액수가 다음해로 누적되지 않는다.
- 3. 피투자기업이 보통주의 배당률을 최저이익배당률보다 높게 정한 영업연도에는 보통주의 배당률과 최저이익배당률의 차이에 상당한 비율만큼 신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익을 배당하여야 한다.
- 4. 피투자기업이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신주의 주주는 신주의 인수가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한도까지 보통주에 우선하여 분배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신주의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잔여재산을 보통주 주주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지분 비율대로 분배를 받는다.
- 5.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주주는 이익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의 순위에 있어서 피투자기업이 2015년 1월 24일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식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 (전환에 관한 사항)
- 1. 신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동안 신주의 주주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게 되면 그 10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전환청구가 있는 날부터 보통주로 전환된다.
- 2.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대 보통주의 비율을 1 대 1로 한다
- 3. 피투자기업이 본건 우선주의 발행이후 본건 우선주의 인수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기존 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유상 증자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의 인수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의지에 의해 유상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
- 4.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x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 5. 전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정함에 따른다.
- 6. 본조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한다. 제8조 (기타의 권리에 관한 사항)
- 1. 본건 주식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하여 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보통주식의 주식수대로 '1주1의결권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 2. 신주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이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본 신주와 같은 종류와 내용을 가진 우선주를 지분에 따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지분에 따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5 년 09 월 26 일 설정 2015 년 10 월 05 일 등기

종류주식

-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 나.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자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 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7%를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라. 전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전환기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 경과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은 그 만료일의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류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 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되다.
- 4.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와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종류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종류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와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 3.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발행가 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체(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체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체)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4.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 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이래의 수식을 따른다.
- $Ni = Bi \times \{(Ae/Be)-1\}$
- 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 5. 이해관계인이 그 보유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합병, 영업양도, M&A 기타 포괄적 조직변경으로 인해 회사 경영권에 중대한 변동이 초래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위 사건 당시의 1주당 단가(예를 들어, 제3자에게 매각된 1주당 단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
- 의 사건 당시의 1구당 단기(에를 들어, 제3사에게 배각된 1구당 단기, 압당 시 표관비를 산성을 위한 평가가액, 영업양도, M&A 당시 평가된 1주당 단가)의 70%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 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종류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종류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 / 위 사건 당시의 1주당 단가의 70% 해당하는 금액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바 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 주식의 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540756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 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본건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46조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 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 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마. 상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상환청구권: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종류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하며,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①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기한 전 상환: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종류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종류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 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사. 기타 사항은 종류주식 인수계약에 따른다.

열람일시 : 2021년06월02일 10시59분48초

540756

2016 년 01 월 23 일 변경 2016 년 02 월 01 일 등가

-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 나.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 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 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7%를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라. 전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전환기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 경과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은 그 만료일의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열람일시 : 2021년06월02일 10시59분48초

540756

-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류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와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종류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종류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와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 3.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발행가 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4.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times \{(Ac/Bc)-1\}$

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 5. 이해관계인이 그 보유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합병, 영업양도, M&A 기타 포괄적 조직변경으로 인해 회사 경영권에 중대한 변동이 초래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위 사건 당시의 1주당 단가(예를 들어, 제3자에게 매각된 1주당 단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 영업양도, M&A 당시 평가된 1주당 단가)의 70%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종류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종류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 / 위 사건 당시의 1주당 단가의 70% 해당하는 금액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

540756

주식의 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본건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46조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마. 상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상환청구권: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종류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하며,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 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기한 전 상환: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종류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종류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 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540756

사. 기타 사항은 종류주식 인수계약에 따른다.

2016 년 01 월 23 일 경정 2019 년 12 월 31 일 등기

2019 년 12 월 31 일 신청착오

종류주식

본건 종류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7. 4. 8.자 발행).

제8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9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1 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 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5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7%를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540756

- ① 전환기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 경과일 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은 그 만료일의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류주식전환 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1주당 보통주식1주로 한다.
- 2. 회사의IPO 공모단가의70%와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종류주식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조정 전 종류주식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 회사의IPO 공모단가의70%와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 3.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4.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times \{(Ac/Bc)-1\}$

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5. 이해관계인이 그 보유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합병, 영업양도, M&A 기타 포괄적 조직변경으로 인해 회사 경영권에 중대한 변동이 초래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위 사건 당시의1주당 단가(예를 들어, 제3자에게 매각된1주당 단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 영업양도, M&A 당시 평가된1주당 단가)의70%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종류주식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조정 전 종류주식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위 사건 당시의1주당 단가의70% 해당하는 금액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540756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 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 주식의 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 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본건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46조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상환청구권: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종류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하며,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 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기한 전 상환: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종류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종류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 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 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540756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7 년 04 월 08 일 설정 2017 년 04 월 18 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본건 종류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7. 6. 16.자 발행).

제8조[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배당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가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7]%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540756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전환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거래완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 ②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거래완결일 다음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언제든
- 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
- 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 다음날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 된다.
- ③ 전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 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 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건 우선주식이 발행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은 투자자와 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또한 아래 각호에서 언급되는 "그 당시의(또는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라 함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시의 전환가격에서 주식배당, 무상증자, 무상감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이하 '본건 우선주식관련 사건'이라 한다) 등의 영향을 반영한 후의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 2. 회사의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식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식의 수 = 조정 전 우선주식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times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 액

-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times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 5. 회사가 제3자에게 인수(그 내용인 합병, 주식교환, 현금거래 등 여하한 인수의 형식과 관계없이)될 때, 인수를 위한 주당 평가가액의 [70]%가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우선주식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식의 수 = 조정 전 우선주식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times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인수를 위한 주당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⑤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 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⑥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 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상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2020년 6월 15일(상환청구 개시일)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 ④ 상환가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거래완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거래완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미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청구권행사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40756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식과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7 년 06 월 16 일 설정 2017 년 06 월 26 일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본건 종류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8. 4. 28.자 발행).

제8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9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540756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 주식의 주주는 아래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
- 1. 먼저,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 발행가액, (ㄴ) 발행일로부터 분배일까지의 기간동안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한다. 다만,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주식의 분할 내지 병합 등을 포함하여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 이전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2. 만일 잔여재산이 제1호의 합산금액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 3. 만일 제1호에 따른 분배 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그 나머지 재산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각 주주의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며, 이 경우 우선주주는 제11조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경우 부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의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4. 회사가 제3자에게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행위(이하 총칭하여 "매각 등"이라 한다)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동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다.
- ② 전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매각 등으로 금전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단, 투자자가 공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가 국내 4대 회계법인 또는 국내 4대 감정평가법인 중 승인한 두 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정가격으로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③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1. 법정 해산사유의 발생일(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 회의 결의)
- 2.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거래에 대해 이 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 3.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통수가 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제11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 가격은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1주당 보통주1주로 한다.
-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우선주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조정 전 우선주1주당 전환되는보통주의 수×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 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 $Ni = Bi \times \{(Ac/Bc)-1\}$
- Ni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Bi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 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 다.
- 6.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 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7. 회사의 분할, 합병, 피인수(M&A) 또는 경영권 매각 등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1주당 매각가격의 70%가 전환가격을 하회 할 경우, 최종 전환가격을 1주당 매각단가

540756

- 의 70%로 조정하도록 한다.
-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에서 이를 위하여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 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회사의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요청시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따라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⑦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3항 내지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

540756

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8 년 04 월 28 일 설정 2018 년 05 월 04 일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본건 종류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화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9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540756

제10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 주식의 주주는 아래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
- 1. 먼저,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 발행가액, (ㄴ) 발행일로부터 분배일까지의 기간동안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한다. 다만,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주식의 분할 내지 병합 등을 포함하여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 이전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2. 만일 잔여재산이 제1호의 합산금액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 3. 만일 제1호에 따른 분배 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그 나머지 재산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각 주주의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며, 이 경우 우선주주는 제11조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경우 부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의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4. 회사가 제3자에게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행위(이하 총칭하여 "매각 등"이라 한다)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동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다.
- ② 전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매각 등으로 금전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단, 투자자가 공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가 국내 4대 회계법인 또는 국내 4대 감정평가법인 중 승인한 두 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정가격으로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③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1. 법정 해산사유의 발생일(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 회의 결의)
- 2.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거래에 대해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 3.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제11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그 발행일 익일 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

540756

으로 자동전환된다.

-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 가격은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화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2. 회사의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 $Ni = Bi \times \{(Ac/Bc)-1\}$
- Ni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Bi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6.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 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7. 회사의 분할, 합병, 피인수(M&A) 또는 경영권 매각 등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1주당 매각가격의 70%가 전환가격을 하회 할 경우, 최종 전환가격을 1주당 매각단가의 70%로 조정하도록 한다.
-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

540756

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에서 이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7%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 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회사의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요청시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따라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⑦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540756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9 년 05 월 29 일 설정 2019 년 05 월 31 일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본건 종류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의결권 등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 ② 투자기업은 주식의 분할과 병합 또는 주식배당을 행하는 경우 보통주주와 우선주주에 대해서 그 비율과 방식 등 모든 조건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여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단, 보통주주에게는 보통주식으로써, 우선주주에게는 전환상환우선주식으로써 실시해야 한다.
- ③ 투자기업이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주에 대해서는 그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그가 보유한 전환상환우선주식과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주식으로써 신주를 배정 또는 발행한다. 여기서 "지분율"은 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에서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의미한다.
- ④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2조 (우선권), 제3조(상환권) 또는 제4조(전환권)를 전제로, 그에 상충되지 않는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발생한 제2조 제2항에 따른 배당결의가 있었음에도 우선배당액(제2조 제4항에 따라 누적된 우선배당액을 포함) 중 미지급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액 지급할 수 있을 때까지 존속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제2조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진다.
- ② 매 사업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 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배당율은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로 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 ③ 투자기업이 투자 후 [-]년 후부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할 때까지 투자기업은 최소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를 당해 회계연도 결산 정기주 주총회에서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투자기업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④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해 지급된 배당액이 제2항에 의한 우선배당액에 미달(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은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 누적되어 차기의 우선배당액과 함께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만일, 차기 사업연도에서도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차기 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로 순차 이월 누적된다.
- ⑤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액을 지급한 이후에도 배당가능한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식은 그 잔여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동등하게 참가한다.
- ⑥ 투자기업이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는 다음에 의한다.
 - 1. 우선분배액 : 우선주식이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금액

- 2. 참가분배액: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재산은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우선주식은 분배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전환된 보통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를 받는다.
 - 3. 본항의 목적상 "우선분배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가. 투자기업 발행주식 총수에 대해 지분율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안분한다고 가정할 때 우선주식에 안분된 금액이 발행가액(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상응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된 우선주식의 경우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과 그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분배일까지 연복리 7%를 적용하여산출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하 "기준분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안분된 금액
- 나. 만일 위 가.목에 따라 산정된 안분 금액이 기준분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분 배액
- ⑦ 제6항의 적용에 있어서 투자기업이 해당 거래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유가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그 분배는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의 공정가격은 다음과 같다.
- 1. 해당 유가증권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 우선주주들이 인정(발행된 전환상환우 선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우선주주들이 서면으로 인정하여야 함)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 는 경우에는 분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거래일전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그 이전 30일 동안 의 가중산술평균 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 량으로 나눈 가격)
- 2. 그 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장외시장의 거래량과 거래가격 기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격. 단,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우선주주들이 이사회의 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내 4대 회계법인 중에서 투자기업이 선정하고 그 반대주주들이 승인하는 2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한다. 만일 투자기업이 반대주주들의 이의제기시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법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대주주들이 이를 선정한다. 상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기업이 부담한다. ⑧ 제6항의 해산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포함한다.
- 1. 투자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
- 가.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흡수합병, 인적분할합병, 주식양도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신설합병, 인적분할의 경우)의 의결권부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 나. 투자기업이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물적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물적 분할의 경우)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 거나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 2. 투자기업의 영업 또는 자산(지적재산권 포함)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현물출자, 실시권 설정 및 기타 처분하는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을 때
 - 3. 기타 법정 해산사유
- 제2조의2 의제잔여재산에 대한 우선분배청구권
- ① 제2조 제6항의 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우선주주들의 사전 또는 사후 서면 승인하에 투자기업이 해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산 후의 계속결의로 인해 청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투자기업 에 대하여 투자자가 소유한 모든 지분증권(단,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

540756

- 환·이전 등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지분증권의 양도 대가로, 또는 그 양도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청산의제분배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투자기업은 본조에 따른 매수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산의제분배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본조의 목적상 청산의제분배액은 (1) 제2조 제8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투자기업을 청산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동시에 (2) 제2조 제8항 각호에 정한 해당 거래의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업가치를 청산을 위한 잔여재산("의제 잔여재산")으로 가정할 경우에 각 우선주주가 소유하는 지분증권에 관하여 제2조 제6항, 제7항, 제8항에 따라 의제잔여재산으로부터 분배받게 될 금액을 의미한다. [단, 전환신주에 대한 우선분배액의 산정은 전환신주가 위 분배의 기준일에 아직 전환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였을 우선주식의 수(분수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의제잔여재산의 산정은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 1. 제2조 제8항 제1호 사유의 경우: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기타 유 사한 거래에서 결정된 회사의 총주식가치로 한다.
- 2. 제2조 제8항 제2호 사유의 경우: 영업자산의 양도대금에 회사의 잔여 순자산 가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부채의 인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과 부채가액을 합산한 다음 회사의 잔여 순자산가치를 다시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3. 제2조 제8항 제3호 사유의 경우: 1주당 신주발행가액 또는 구주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가액으로 한다. 단, 신주 발행과 구주매각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일련의 거래로써 행해진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서의 총 발행가액 및 총 매매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대상주식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1주당 주식가액으로 한다.
- ③ 투자기업이 본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증권을 매수(상환 또는 유상감자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60일의 매수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지체없이 밟아야 하며 경영지배인들은 의결권과 투자기업의 이사들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법률상 사실상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 매수기한 내에 자기주 식취득과 감자의 승인결의 및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본조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행사는 다른 조항에서 정하는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투자자는 이를 선택적 또는 병행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3조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권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는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하여 상환사유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전환 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상환권")를 가진다.
 - 1. 상환권의 행사기간
- 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행사기간")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로 부터 3년째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나. 행사기간 내에 제3호에 정한 상환청구서가 발송된 때에는 투자기업의 실제 수령일에 관계없이 상환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 본다.
- 다. 투자자는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투자기업과 투자자간 별도 합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기업에 우선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단, 주식의 분할과 병합, 무상증자 기타 유사한 사유의 발생시에는 그에 비례하여 조정된 금액에 의한다)과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7%의 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 투자기업으로부터 기

540756

지급된 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3. 상환권의 행사 절차
 - 가. 상환권의 행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서면 통지(이하 "상환청구서")로써 한다.
- 나. 상환청구서에는 우선주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대상주식의 종류와 수 및 상환 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4. 상환권 행사의 효력 발생 및 순위
 - 가. 상환권의 행사의 효력은 상환청구서가 투자기업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다.
- 나. 본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주식의 상환권 행사기간 내에 제3자가 그 보유 상환주식의 상환권을 행사하고 동 서면통지가 투자기업에 도달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이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한다. 투자자가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투자자와 제3자의 상환권은 동시에 행사된 것으로 간주되며, 상환권이 행사된 주식수의 합계가 상환가능주식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가능주식총수를 상환권이행사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 5. 상환권 행사의 효력
- 가. 상환권의 행사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투자기업은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청구 대 상주식의 상환가액을 그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주 권 미발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청구대상주 식의 주권(단, 주권 분실 등의 경우에는 제권판결의 정본)을 투자기업에 교부하도록 한다.
- 나. 상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당시 투자기업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이하 "상환가능주식총수")가 청구대상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은 본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정한 상환기한내에 청구대상주식 총수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 다. 상환가능주식총수가 청구대상주식의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 (1) 상환가능주식총수에 대해서는 제6호 가.목에 정한 상환기한 이내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 (2) 청구대상주식총수에서 위 (1)의 상환가능주식총수를 차감한 수의 주식(이하 "이 월대상주식")에 대해서는 제6호 나.목에 정한 상환기한 이내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 6. 상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기한은 다음과 같다.
- 가. 제5호 나. 및 다.목(1)의 청구대상주식에 대한 상환기한은 투자기업이 상환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 한다.
- 나. 제5호 다.목(2)의 이월대상주식에 대한 상환기한은 그 상환청구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단, 상환청구연도의 배당가능 이익이 이월대상주식의 전부를 상환하는데 부족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상환기한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로 순차 이월되어 본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② 투자기업이 상환가액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 ③ 투자기업이 상환할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소 단위는 1주로 하며, 그 미만의 단주는 절사한다.
- ④ 투자기업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적립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에

540756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투자기업은 동 자금을 투자자가 상환청구를 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 투자자는 상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청구대상주식의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전환상환우선주식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잔여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가능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상환이 가능한 전환상환우선주식은 별도의 청구나 통지가 없어도 존속기간 만료일에 자동 상환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그 외 상환이 불가능한 전환상환우선주식은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 ⑥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상환권은 행사기간의 만료 또는 전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에 소멸한다. 그러나,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환권이 행사기간 중에 행사되었으나 투자기업이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하여도 상환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권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 대가의 지급 없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투자기업의 본점 또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서 투자기업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의 수 : 전환비율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을 전환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 2. 전환가격: 최초의 전환가격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으로 한다. 전환가격은 아래 제6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되나, 조정된 전환가격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단, 투자기업은 전환상환우선주식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전환가격이 액면금액이하로 되는 추가주식(아래 정의됨)의 발행, 자본재조정, 합병 등을 실시할 수 없다).
- 3. 전환청구기간 : 전환청구기간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존속기간 만료 일까지로 한다.
- 4. 전환의 절차 :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에 있어 보통주식의 단주는 발행되지 아니한다 . 투자기업은 해당 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단주를 대신하여 동 단주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보통주식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투자자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보통주식의 주권(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을 교부받기에 앞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권에 적법하게 배서하여 이를 투자기업 또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단,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별도 주권제출 절차는 요하지 아니함), 아울러 자신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전환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투자기업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전환상환우선주식 주권 또는 전환상환우선주식 전환 통지(주권이 미발행된 경우)를 수령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i) 투자기업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서 투자자에게 해당 보통주식의 수에 해당하는 주권(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을 발행 및 교부하고, (ii) 보통주식의 단주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한다.

5. 전환의 효력발생: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을 위하여 전환상환 우선주식의 주권이 제출되거나 전환 통지가 수령된(주권미발행의 경우) 날의 영업시간이 종료 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에 따라 보통주식을 수령할

540756

권한이 있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위 전환일 현재 해당 보통주식의 등록된 주주로 간주된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6.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에 걸쳐 조정된다.

가. 투자기업이 발행일 이후 본건 주식의 전환기준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인수한 우선주식의 전환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임직원 대상의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나. 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또한, 투자기업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격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다. 투자기업이 분할,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단, 동조 마목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식으로 분할 또는 합병비율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한다.

라.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투자기업이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기발행주식수×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마. 투자기업의 IPO 공모단가(또는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분할합병의 경우 포함)시 기준가격)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X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투자기업의 IPO 공모단가(또는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분할합병의 경우 포함)시 기준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7. 전환시 발행될 주식을 위한 수권자본의 확보: 투자기업은 기 발행된 모든 전환상환우선 주식의 전환이 있는 경우 동 전환에 따라 보통주를 발행하는데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 주식의 수를 확보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가 기 발행된 모든 전환상 환우선주식의 전환을 실행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투자기업은 그러한 전환에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0 년 07 월 29 일 설정 2020 년 07 월 29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발행주식의 내용

우선주식의 내용

1. 기본사항

(1)일반사항:이익의 배당 및 청산시의 잔여재산 배분에 있어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1종 종류주식; 이하 "본건 주식")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40756

(2)신주배정: 발행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 건 주식과 동일한 내용의 종류주식을 배정함.

2.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

(1)본건 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서, 어느 화계연도에 본건 주식에 대한 누적된 금액을 포함한 우선적 배당이 전액 결의되고 지급된 이후에야 법적으로 배당가능한 자금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이 자급될 수 있다. 본건 주식의 우선배당률은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의 연 1%로 한다.

(2)본건 주식에 대해 주식배당을 할 경우에는 본건 주식과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 또는 주식 배당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격에 의해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으로 배당한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4.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지를 불문하고 발행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본건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1)본건 주식에 대하여 (i) 당시 본건 주식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ii) 본건 주식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발생한 배당금(단 기지급 된 배당금은 제외)을 합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2)잔여재산이 본건 주식의 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본건 주식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2014 년 09 월 11 일 설정 2014 년 09 월 17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1. 전환주식

- (1)전환권자: 본건 주식의 주주
- (2)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 (3)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수: 전환비율은 본건 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을 전환 당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로 하고,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이 때,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주식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 (4)전환가격: 최초의 전환가격은 본건 주식의 주당 발행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 (5)전환청구기간: 본건 주식의 주주는 본건 주식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본건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6)전환청구방법: 본건 주식의 주주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 및 전환 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후 본건 주식의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라 한 전환청구서를 수령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해당 보통주식의 수에 해 당하는 주권을 발행 및 교부하고 보통주식의 단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을 지급한

열람일시 : 2021년06월02일 10시59분48초

540756

다.

(7)전환의 효력발생: 전환청구시(전환청구서 제출일)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화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는, 본건 주식에 대한 우선 배당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본 건 주식의 주주의 모든 권리(본건 주식의 전환에 따라 보통주식을 지급받고, 동 전환시 보통 주식의 단주를 대신하여 현금을 수렁하며, 본건 주식에 대하여 전환청구일까지 배당결의가 있 었으나 인수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을 수렁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함)는 본건 주식과 관 런하여서는 중지된다.

(8)자동 전환: 전환청구기간의 종료일까지 전환 청구되지 않는 본건 주식은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9)전환가격의 조정: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수시로 조정된다.

2014 년 09 월 11 일 설정 2014 년 09 월 17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1. 전화주식

가.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가격조정: 발행된 보통주식이(주식분할, 주식배당 등에 의해) 더 많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분할되었으나 발행된 본건 주식이 이에 상응하여 비례적으로 분할되지 않은 경우, 당시의 전환가격은 그에 상응하는 분할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비례적으로 감소된다. 발행된 보통주식이(그 종류의 변경 등에 의하여) 더 적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병합 또는 결합되었으나, 발행된 본건 주식이 이에 상응하여 비례적으로 병합 또는 결합되지 않은 경우, 당시의 전환가격은 그에 상응하는 병합 또는 결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비례적으로 증가된다.

나.사채발행에 따른 가격조정: 본건 주식의 발행 이후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항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다.기타 유가증권 등의 분배에 따른 가격조정: 전환가격이 본 제9항에 의하여 달리 조정되자 않는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또는 제3자 발행의 유가증권이나 부채증서 또는 기타자산(현금배당 제외), 옵션, 권리를 보통주주에게 분배하거나 동 분배를 받을 보통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i) 본건 주식의 주주가 그 소유의 본건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동 주주가 본건 주식의 전환에 의하여 수령하게 될 숫자의 보통주식에 추가하여, (ii) 위 기준일 또는 분배일 현재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동 보통주식에 분배되었을 숫자의 유가증권 기타 자산, 권리 및 (iii) 그와 같이 분배된 것으로 간주된 유가증권을 위 기준일로부터 전환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할 때 분배되었을 숫자의 유가증권 기타 자산, 권리 전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달성하는 내용으로 전환가격은 조정된다. 이 경우, 위 기간 동안 본건 주식의 권리와 관련하여 본 제 9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다른 가격조정도 적용된다.

540756

라. 재분류, 교환 및 대체에 따른 가격조정: 본건 주식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될 보통주식이 자본조정, 재분류 기타 사유(위에 규정된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은 제외)로 인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수의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변경될 경우, 자본조정 또는 재분류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은,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달리 수령할 수 있었던 보통주식의 수가 아니라, 본건 주식이 그러한 변경 직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수령할 수 있었던 다른 종류의 주식의 수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적으로 조정된다.

마.지본조정, 분할,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에 따른 가격조정: 보통주식의 자본조정(본 제9항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할, 결합, 재분류, 또는 교환의 경우 제외), 또는 발행화사의 분할, 다른 회사와의 신설합병, 흡수합병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주주가그 소유의 본건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동 주주가 그러한 자본조정, 분할,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당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때 전환간주된 보통주식에 분배되었을 수량의 회사(또는 합병 등에 있어서의 승계회사)의 주식, 기타 유가증권, 또는 재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본조정, 분할,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의 일환으로 필요한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달성하는 내용으로 전환가격은 조정된다. 이러한 경우, 본건 주식의 주주들의 그 후의 권리 및 이익과 관련하여 본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조정(이사회가 본건 주식의 내용과 조건에 부합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한 바에 따른다)이 이루어져 본 제9항에 명시된 규정들(전환가격의 변경, 전환 시 분배될 수 있는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 및 기타 조정 등과 관련한 규정 포함)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조정된 것으로 본다.

(10)전환시 발행될 주식을 위한 수권자본의 확보: 발행회사는 기 발행된 모든 본건 주식의 전환이 있는 경우 동 전환에 따라 보통주식을 발행하는데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수를 확보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가 기 발행된 모든 본건 주식의전환을 실행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발행회사는 그러한 전환에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4 년 09 월 11 일 설정 2014 년 09 월 17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1. 주식의 양도

본 회사의 주주들은 주식을 양도할 때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5 년 01 월 23 일 설정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2019 년 03 월 28 일 말소 2019 년 04 월 10 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 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

540756

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2015 년 01 월 23 일 설정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1) 상법 제340조의 2 내지 5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 2019 년 03 월 28 일 변경 2019 년 04 월 10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2015 년 01 월 23 일 설정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2019 년 03 월 28 일 변경 2019 년 04 월 10 일 등기 >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가여하였거나 가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사행령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 위
 -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 2015 년 01 월 23 일 설정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상법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
 - 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 나. 회사의 피고용자
 -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
 - 가. 벤처기업의 임직원
 - 나.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규정된 자
 -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2 각 호에서 정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 5) 변리사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 6)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 7)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8)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 9)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다. 대학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6항에 따른 다음에 규정된 연구기관
 -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2 각 호의 연구기관
 -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 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 < 2019 년 03 월 28 일 변경 2019 년 04 월 10 일 등기 >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그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 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2015 년 01 월 23 일 설정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받는 자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날(이를 확정일이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차등으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확정수량을 행사할수 있는 날을 의미한다)까지 재임 또는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수 있으며, 확정된 부여수량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확정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 < 2019 년 03 월 28 일 변경 2019 년 04 월 10 일 등기 >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과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 2015 년 01 월 23 일 설정 2015 년 01 월 28 일 등기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확정일 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 내규, 취업규칙 등의 위반으로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 4)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 2019 년 03 월 28 일 변경 2019 년 04 월 10 일 등기 >

540756

회사성립연월일

2014 년 05 월 02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4 년 05 월 02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람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1년06월02일 10시59분48초